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	----

제출년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라 2010.12.1.부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 처리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조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1항)
- 나.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2항)

□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10조의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6조(신고 및 납부)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등록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 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 등록규칙」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 ③ (생략)